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합51266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진

담당변호사 이승구

4.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변론 종결2022. 4. 14.

판결 선고2022. 5. 2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9,638,430원 및 그 중 457,244,230원에 대하여는 2020. 12. 17.부터 2021. 6. 8.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9,638,430원 및 그 중 457,244,230원에 대하여는 2020.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1번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18. 체결된 신탁계약은 459,638,430원 및 그 중 457,244,230원에 대하여 2020.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6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20,432,54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20,432,54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 발생 경위

1) 원고는 2019. 11.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의 사이에, 피고 A가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를 원고가 보증한도

450,000,000원, 보증기한 2016. 11. 21.부터 2020. 11. 19.까지로 정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0%이다.

제8조(보증채무 이행금 등의 상환)

① 본인(피고 A)과 보증인(피고 B)은 공사(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공사에 상환하겠습니다.

1. 보증채무 이행금액(신용보증부대출 원금 및 약정이자)
2. 보증채무 이행으로 공사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② 본인과 보증인은 제1항의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금액에 공사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공사에 상환하겠습니다.

③ 본인과 보증인은 공사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에 공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공사에 상환하겠습니다.

1.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사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2) 원고는 2019. 11. 25.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20. 2. 21.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기초로 피고 A에 500,000,000원을 변제기 2020. 8. 1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3) 2020. 8. 19.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0. 12. 16.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457,244,230원(= 원금 450,000,000원 + 이자 7,244,230원)을 지급하였으며, 채권보전비용으로 2,394,200원을 지출하였다(이로써 원고가 피고 A, B에 대하여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경위

- 1) 당초 피고 A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1번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에는 ① 채권최고액 1,74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E조합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채권최고액 1,02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E조합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 2) 피고 A는 2020. 8. 18.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G조합, H조합와의 사이에, 피고 A가 G조합, H조합와의 대출약정에 기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1번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에 신탁하고 G조합, H조합을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3) 그 후 G조합, H조합은 2020. 8. 20. 피고 A에게 각 1,000,000,000원, 16,0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A는 위 대출금으로 별지 목록 1번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E조합, F의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피고 C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

- 1) 당초 피고 A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6번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8,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I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자 I조합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 2) 피고 B은 2020. 4. 10.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6번 기재 부동산을 4,00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D은 2020. 4. 10. 피고 B에게 계약금 4,000,000원을, 2020. 4. 16. 잔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B은 2020. 4. 16. 별지 목록 6번 기재 부동산에 대한 I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한 후 피고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 피고 A, B에 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피고 C, D에 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을다 제1호증, 을라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하며,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20. 12. 16.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에 따른 보증금 457,244,230원을 지급하고 비용 2,394,2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 제8조에 따라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9,638,430원(= 보증채무 이행금액 457,244,230원 + 비용 2,394,200원) 및 그 중 457,244,230원(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20.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1. 6. 8.까지는 원고가 정한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A에 대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A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피고 C에 별지 목록 1번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을 신탁하였고, 기존에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E조합, F의 근저당권이 각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 금액인 459,638,430원 및 그 중 457,244,230원에 대하여 2020.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와 피고 A는 2019. 11. 18.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위 약정을 기초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 A는 2020. 8. 18. 피고 C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2020. 8. 19. 피고 A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피고 A, B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원고가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여기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선행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9, 12, 13호증, 을다 제11,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기관에 대한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A는 별지 목록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 A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 피고 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았다[원고는 이 법원의 J기관에 대한 회신에 근거하여, 피고 A의 소극재산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653,059,000원(= 원고는 위 회신상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합계 1,339,691,000원에서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 457,244,000원, 신용보증기금이 대지급한 229,388,000원을 공제하여 계산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229,388,000원 또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 즉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인 2020. 8. 18.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데, 위 회신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채무는 2020. 10. 21.부터 2020. 12. 1.까지 기간 동안 발생하였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는 2021. 3. 22. 발생하였다(원고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채무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A의 채무를 대지급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따르면 이는 2020. 10. 21. 이후이다). 따라서 위 채무들은 피고 A의 소극재산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별지 목록 1번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	3,330,829,910	을다 제11호증
인천 남동구 K 아파트	480,000,000	갑 제9, 12호증
합계	3,810,829,910	

E조합 대출채무	2,298,058,337	을다 제14호증
F 대출채무	45,872,120	을다 제14호증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	457,244,000	
L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00,000,000	갑 제12, 13호증
합계	3,101,174,457	

② 그런데 피고 A는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별지 목록 1번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신 위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을 취득하였다.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4449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참조),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1번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이 3,330,829,910원이라는 점, 신탁계약상 G조합, H조합의 우선수익권 한도 합계가 3,120,000,000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A가 별지 목록 1번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하는 수익권의 가치는 약 200,000,000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A가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써 G조합, H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아 E조합, F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A가 이상과 같이 취득한 수익권과 인천 남동구 K 아파트 가액의 합계(약 680,000,000원)는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액, L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합계(757,244,000원)보다 더 적으므로,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2) 이에 대해 피고 C은, 피고 A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1번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G조합, H조합로부터 신규자금을 융통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A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C의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선의 주장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신탁법 제8조 제1항), 사해신탁에 있어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을다 제4, 5 내지 9, 11,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G조합과 H조합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이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당초 피고 A는 별지 목록 1번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E조합, F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액은 약 2,344,000,000원이었다. 피고 A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피고 A가 사용하고자 2020. 4.경 주식회사 M를 통해 G조합에 대출 가부를 문의하였다. G조합은 2020. 4.경 N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위 부동산의 가치가 약 3,300,000,000원 정도임을 확인하였고, G조합은 O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동일인에게 1,040,000,000원 이상 대출할 수 없었으므로, H조합에 공동으로 대출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G조합과 H조합은 2020. 7.부터 2020. 8.까지 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대한 현장실사, 가치 평가, E조합과 F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검토 등을 거쳐 2020. 8. 18.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상과 같은 경위는 통상적인 대출 관행에 부합한다.

나) G조합, H조합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피고 A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무제표를 확인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순자산(= 자산총계 - 부채총계)이 약 2,500,000,000원 정도였으며, 매해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었다.

다) 실제로 G조합, H조합의 대출금 대부분은 피고 A의 E조합, F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별지 목록 1번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E조합, F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사용되었다.

라) 금융기관인 G조합, H조합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로 인한 담보상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 A에게 대출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마)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될 뿐 그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3878 판결 등 참조), 이는 사해신탁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금융기관인 G조합, H조합이 원고 등의 채권을 알지 못한 데에 일부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G조합, H조합의 선의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G조합과 H조합의 선의인 이상,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B에 대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B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6번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기존에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I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시 위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20,432,549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34,000,000원 - I조합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13,567,45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 D은 원고에게 20,432,5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기초사실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20. 4. 10. 체결되었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20. 8. 19. 피고 A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피고 A, B을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원고 주장에 따르면 피고 A의 대출이자 연체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20. 7. 21.부터 시작되었다).

3) 피고 D의 선의 항변(가정적 판단) 설령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올라 제1 내지 4, 6,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까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는 친분관계가 없었고, 별도의 채권·채무관계도 없었다는 점, ②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경상북도 칠곡군 P답 215m², 같은 군 Q 전 476m'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농지법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였고, 공인중개사 R의

소개로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6번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2020. 6. 22. 실제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쳤다는 당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그 신빙성이 높고, 위 경위는 일반적인 매매 과정과 다를 것이 없는 점, ③ 피고 D은 별지 목록 6번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에 드러난 부분 외에 피고 B의 채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피고 B의 채무를 변제하여 위 부동산의 1조합의 근저당권,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말소시키는 데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설령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 D은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정석

판사강석규

판사김소연